



# 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사업자등록 말소(폐업) 통지

귀하(귀사)의 사업자등록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말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(말소 근거 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)

납세자	상 호 (성 명)		사업자등록번호	
	사업장 (주 소)			
등록 말소일자	20 . . . .			
등록 말소사유				

끝.

기 관 장

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 )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 말소 통지와 관련하여 불편·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○○○(전화: 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

## 기관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

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 월 일 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.

납 세 자	상 호	사업자등록번호
	사업장	
과세유형 전환 사유		
<p>1.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○월 ○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,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자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.(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,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)</p> <p>2.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전환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○○년 ○월 ○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○○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('00. 0. 0~'00. 0. 00.) "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"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전기·가스·통신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면 해당 거래처에 미리 사업자번호 등을 알려주시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</p>		

붙임 :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1부. 끝.

기 관 장 직인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 ○○○과 ○○○조사관(전화 : , 전송 : 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

## 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

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년 월 일부터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.

납 세 자	상 호		사업자등록번호	
	사업장			
과세유형 전환 사유				
<p>1.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○월 ○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,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자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.(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,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)</p> <p>2.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○○년 ○월 ○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○○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('00. 0. 0 ~ '00. 0. 00.) "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"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전기·가스·통신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면 해당 거래처에 미리 사업자번호 등을 알려주시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	

붙임 :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1부. 끝.

기 관 장 직인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 ○○○과 ○○○조사관(전화 : , 전송 : 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

## 기관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

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20년 월 일 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.

납세자	상호	사업자등록번호
	사업장	
과세유형 전환 사유		

**▲ 간이과세자 :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,800만원 미만으로 영수증만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(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2호)**

-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○월 ○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, 현재 사용 중인 **사업자등록증**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**본인 책임 하에 자진 폐기**하시기 바랍니다.(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,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)
- 이번에 일반과세자에서 **간이과세자**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○○년 ○월 ○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○○년 ○기 일반과세자 확정신고('00.0.0~'00.0.00.)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합니다.(납부는 ○○년 ○기 확정신고('00.0.0~'00.0.00.)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)  
※ 신고서식 - 「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」
-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**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원하는 사업자와는 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 
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○○년 ○월 ○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**간이과세포기신고서**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 
※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,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.

붙임 : 1.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1부.  
2.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. 끝.

기관장 직인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 ○○○과 ○○○조사관(전화 : , 전송 : 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

## 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 전환통지서

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 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로 과세유형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.

납 세 자	상 호	사업자등록번호
	사업장	
과세유형 전환 사유		

**▲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 :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,800만원 이상~1억 4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(부가가치세법 제32조, 같은법 제36조 제1항 2호)**

-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○월 ○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,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**자진 폐기**하시기 바랍니다.(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,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)
- 이번에 일반과세자에서 **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**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○○년 ○월 ○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○○년 ○기 일반과세자 확정신고('00. 0. 0~'00. 0. 00.)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합니다.(납부는 ○○년 ○기 확정신고('00. 0. 0~'00. 0. 00.)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)  
※ 신고서식 - 「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」
-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○○년 ○월 ○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**간이과세포기신고서**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 
※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,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.

- 붙임 : 1.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1부.  
2.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. 끝.

기 관 장

직인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 ○○○과 ○○○조사관(전화 : , 전송 : 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

## 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간이과세자 변경통지서

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.

납 세 자	상 호	사업자등록번호
	사업장	
과세유형 전환 사유		
<p>▲ <b>간이과세자</b> :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<b>4,800만원 미만</b>으로 영수증만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<b>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</b>(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2호)</p> <p>▲ <b>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</b> :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<b>4,800만원 이상~1억 400만원 미만</b>으로 <b>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</b>(부가가치세법 제32조, 같은법 제36조 제1항 2호)</p> <p>1.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○월 ○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, 현재 사용 중인 <b>사업자등록증</b>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<b>본인 책임 하에 자진 폐기</b>하시기 바랍니다.(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,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)</p> <p>2. <b>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</b>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원하는 사업자와는 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</p> <p>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○○년 ○월 ○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<b>간이과세포기신고서</b>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※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,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.</p>		

붙임 :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.

기 관 장 직인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 ○○○과 ○○○조사관(전화 : , 전송 : 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

## 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 변경통지서

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.

납 세 자	상 호	사업자등록번호
	사업장	
과세유형 전환 사유		

▲ **간이과세자** :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**4,800만원 미만**으로 영수증만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**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**(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2호)

▲ **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** :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**4,800만원 이상~1억 400만원 미만**으로 **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**(부가가치세법 제32조, 같은법 제36조 제1항 2호)

-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○월 ○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,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**본인 책임 하에 자진 폐기**하시기 바랍니다.(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,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)
-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○○년 ○월 ○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**간이과세포기신고서**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,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.

붙임 :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.

기 관 장 직인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 ○○○과 ○○○조사관(전화 : , 전송 : 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

# 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금액 승인(결정) 통지(재고납부세액)

1. 귀하(귀사)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20 . . . . .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.
2. 이에 따라 귀하(귀사)의 고정자산 매입 명세 및 20 년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「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」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재고금액을 승인(결정)하고 재고납부세액을 알려드리니, **20 년 기** 부가가치세의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신고·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 
(납부 근거 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)

납 세 자	상 호		사업자등록번호	
	사업장			
<b>&lt;재고금액 및 재고납부세액&gt;</b>				(단위 : 원)
	품 명	재 고 금 액	재 고 납 부 세 액	
다음 장에 계속				

끝.

## 기 관 장

직인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 ○○○과 ○○○조사관(전화 : , 전송 : 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

# 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금액 승인(결정) 통지(재고매입세액)

1. 귀하(귀사)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20 . . . .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.
2. 이에 따라 귀하(귀사)의 고정자산 매입 명세 및 20 년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「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」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재고금액을 승인(결정)하고 재고매입세액을 알려드리니, **20 년 기**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·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 
(공제 근거 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7항)

납 세 자	상 호	사업자등록번호	
	사업장		
<재고금액 및 재고납부세액>			(단위 : 원)
품 명	재 고 금 액	재 고 납 부 세 액	
다음 장에 계속			

끝.

## 기 관 장

직인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 ○○○과 ○○○조사관(전화 : , 전송 : 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발급번호	<b>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(개별)</b>	처리기간
		즉시

본점 또는 주사무소

상호 (법인명)	
사업자등록번호	

종된사업장

상호 (법인명)	
일련번호	○○○○(사업자상태) →예:0002(계속사업), 0003(휴업), 0005(폐업)
성명 (대표자)	
주민(법인)등록번호	
사업장소재지	
업태	
종목	
개설일	
사업자단위과세적용일	
휴업기간	
폐쇄일	
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접수번호	
담당부서	
담당자	
연락처	

세무서장 (인)